

「평창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 안 자 : 박춘희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3. 6.
- 회부일자 : 2025. 4. 1.
- 상정일자 : 2024. 4. 7.

2. 제안이유

-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
 군민의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
 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
 (안 제4조)
-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(안 제5조)
-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 교육·홍보 (안 제6조)
- 협력체계 구축 (안 제7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고,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.
- 「여성폭력방지기본법」 제4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며,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,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.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평창군 군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구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4조(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)에서 군수는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하여 시행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5조(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)에서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명시함.
- 안 제6조(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)에서 군민을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, 피해 지원 관련 자료를 제작 및 배포할 수 있도록 규정함.
- 안 제7조(협력체계 구축)에서는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군민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 및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입법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되고 내용 면에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므로 제정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.

□ **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**

제3조(국가 등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을 방지하고 성폭력피해자(이하 “피해자”라 한다)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개정 2024. 10. 16.>

1. 성폭력 신고체계의 구축·운영
2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조사·연구, 교육 및 홍보
3. 피해자를 보호·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·운영
4. 피해자에 대한 주거지원, 직업훈련 및 법률구조 등 사회복지 지원
5. 피해자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·운영
6. 성폭력 예방을 위한 유해환경 개선
7. 피해자 보호·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와 각종 정책의 수립·시행 및 평가
8.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·신상정보의 삭제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□ **여성폭력방지 기본법**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·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,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(생략)

2. 주민의 복지증진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나. 사회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 및 관리

다.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마.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·운영

바.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

사. 묘지·화장장(火葬場) 및 봉안당의 운영·관리

아.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

자. 청소,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

차.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

3. ~7. (생략)

붙임 참고 자료

□ **속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(2023.10.6) 외 123건**

(관내 3곳: 강원특별자치도, 속초시, 원주시)